스포츠기본법안 (박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963

발의연월일: 2021. 3. 19.

발 의 자:박 정·이규민·이병훈

이상헌・도종환・한준호

김민철 • 유정주 • 양기대

서영교 · 오영환 · 이성만

윤후덕 의원(13인)

제안이유

스포츠분야를 총괄하면서, 각 업무영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필요함.

즉, 국민체육진흥법 등 스포츠관계 법령을 총괄하는 우월적 지위를 갖는 모법(母法)형태의 법률체계 확립을 통하여 스포츠정책의 계속성 과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1962년 9월 17일 제정·공포된 이후 47회에 걸친 개정으로 체계와 내용의 일관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스포츠여건에 부응하지 못하고, 스포츠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스포츠를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권으로 위상을 강화하고, 이와 더불어 스포츠의 기본권 보장을 지향하는 헌법정신을 구현하며, 스포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기본법으로서의 법

률 체계 구성이 필요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스포츠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국가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모든 국민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스포츠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짐(안 제4조).
- 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스포츠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스포츠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 라. 국가는 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스포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8조).
- 마. 국무총리 소속으로 스포츠 진흥 중장기계획의 수립·조정 등을 위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설치함(안 제9조).
-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함(안 제17조).
-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 인력의 양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스포츠의 가치를 확산하고 스

포츠를 진흥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18조).

-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간 스포츠 격차의 해소를 통한 국민의 스포츠 향유권의 확대를 위하여 스포츠 향유와 관련한 실태조사와 관련 조사 연구를 시행하여야 함(안 제19조).
- 자. 모든 스포츠 활동은 스포츠정신에 부응하는 윤리성을 확보하여야 함(안 제19조).
-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스포츠활동과 시설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관리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안 제21조).
- 카. 스포츠 활동과 스포츠시설의 설치운영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환경 친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안 제22조).
- 타. 국가는 스포츠를 통한 사회통합과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국 제경기대회 및 스포츠행사의 유치 등 스포츠의 국제 교류 협력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24조).
- 파. 국가는 스포츠를 통한 남북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포츠 과학·기술·학술·정보·인력의 교류와 경기대회 개최·참 가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25조).

스포츠기본법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스포츠 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 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모든 국 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의 발전과 사 회통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민 모두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스포츠 의 가치가 교육, 문화,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 을 다하며, 개인이 스포츠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스 포츠의 다양성, 자율성과 민주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 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스포츠"란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 문화적 행태를 말한다.
 - 2. "전문스포츠"란 선수들이 행하는 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 3. "생활스포츠"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 4. "장애인스포츠"란 장애인이 실시하는 스포츠 활동으로서 생활스 포츠와 전문스포츠를 포함한다.
- 5. "학교스포츠"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 활동(학교과정 외의 스포츠 활동과 운동경기부의 스포츠 활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6. "스포츠산업"이란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 7.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4조(국민의 권리) ① 모든 국민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이하 "스포츠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제1항에 따른 스포츠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청소년, 노인 및 장애인의 스포츠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제4조에 따른 스포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스포츠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

- 한 재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스포츠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스포츠 발전이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스포츠를 향유하지 못하는 스포츠 소외계층의 스포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한다.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스포츠(체육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스포츠(체육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스포츠 정책 수립·시행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1. 제4조에 따른 스포츠권을 보장할 것
 - 2. 스포츠 활동을 존중하고 사회전반에 확산되도록 할 것
 - 3. 국민과 국가의 스포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과 여건을 조성할 것
 - 4. 스포츠 활동 참여와 스포츠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도록 할 것

- 5. 스포츠의 가치를 존중하고 스포츠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을 것
- 6. 스포츠 이용자에 대한 안전사고를 방지할 것
- 7. 스포츠의 국제 교류 · 협력을 증진할 것
- 제8조(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스포츠 진흥의 목표와 방향
 - 2. 스포츠 진흥을 위한 스포츠 정책의 기본 방향
 - 3. 스포츠 진흥을 위한 법령·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4. 제4조에 따른 스포츠권의 신장에 관한 사항
 - 5.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야별 스포츠 정책
 - 6. 스포츠 활동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 7. 스포츠 시설의 조성과 활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8. 스포츠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사고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
 - 9. 스포츠 인력의 양성과 스포츠 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10. 스포츠 정책 관련 조사 · 연구와 개발에 관한 사항
 - 11. 스포츠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 12. 스포츠 유산 및 스포츠 문화의 보전과 활용에 관한 사항
- 13. 그 밖에 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스포츠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① 국민의 스포츠권 보장과 주요 시책의 평가·점검, 스포츠진흥계획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스포츠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으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생활스포츠에 관한 시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생활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스포츠지도자를 배치하거나 생활스포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생활스포츠의 대상과 영역, 제2항에 따른 스포츠지 도자의 자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11조(전문스포츠에 관한 시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스포 츠를 육성하기 위하여 선수의 보호 및 권리보장, 경기력 향상 등 필 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스포츠의 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12조(장애인스포츠에 관한 시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스포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의 진흥 및 발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13조(학교스포츠에 관한 시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력 증진 및 학교 내 스포츠 활동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스포츠 진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14조(프로스포츠에 관한 시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에 등록된 선수들이 행하는 스포츠 활동(이하 "프로스포츠"라 한다)을 통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이 프로스포츠 관람을 통하여 건전한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도록 프로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프로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15조(스포츠산업에 관한 시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진흥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16조(스포츠클럽에 관한 시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여 가선용을 위하여 스포츠클럽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의 설치·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17조(스포츠 시설에 관한 시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 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18조(스포츠 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 인력의 양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의 가치를 확산하고 스포츠를 진흥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9조(스포츠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

- 체는 스포츠 활동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스포츠 격차의 해소를 통한 국민의 스포츠 향유권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와 관련 조사·연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스포츠 정책 및 스포츠 과학 관련 조사·연구와 개발을 장려하고 그 지원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20조(스포츠 윤리) ① 모든 스포츠 활동에는 스포츠 정신에 부응하는 윤리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 경기 및 스포츠를 매개체로 한 각종 사업에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시책을 수 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윤리성과 공정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할 수 있다.
- 제21조(스포츠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스포츠 활동과 스포츠 시설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관리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22조(스포츠 환경보호) 스포츠 시설의 설치·운영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환경 친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제23조(스포츠 가치 확산의 육성 및 지원) 국가는 스포츠의 이념과 스 포츠 및 신체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활동을 육성·지

원할 수 있다.

- 제24조(스포츠 국제교류 및 협력) ① 국가는 스포츠를 통한 사회통합과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국제경기대회 및 스포츠 행사의 유치 등 스포츠의 국제교류·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25조(스포츠 남북 교류 및 협력) ① 국가는 스포츠를 통한 남북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포츠 과학·기술·학술·정보· 인력의 교류와 경기대회 개최·참가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야 한다.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